

제 21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 2 차 본 회 의  
2022.09.07.(수) 10:00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보고 순서

①	심사대상 및 경과	2
	가. 심사대상	2
	나. 심사경과	2
②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3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3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3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3
③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3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3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4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5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7
④	주요 검토사항	9
⑤	제속비 사업	10
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
⑦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2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 09월 07일(수)  
제2차 본회의

## ① 심사대상 및 경과

### 가. 심사대상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나.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22년 08월 16일, 화성시장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의회운영위원회 - 2022.08.29.(월)[1일간]
  - 기획행정위원회 외 3개 위원회 - 2022.08.30.(화) ~ 09.01.(목)[3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22.09.01.(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09. 02.)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09. 05.)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09. 06.)
    -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 계수조정 및 의결

## ②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가.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

###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

#### ① 지방자치법 제145조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재정법 제45조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 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활용해 국·도비 보조금과 필수경비 추가반영 등 주요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이행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

## ③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

### 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3조 3,276억원보다 4,364억 원이 증가한 3조 7,640억 원으로 편성하였음.

〈표-1. 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조 7,640	3조 3,276	4,364	13.12
일반회계	3조 2,189	2조 8,026	4,164	14.86
특별회계	5,451	5,250	200	3.82
공기업	3,575	3,408	166	4.88
기 타	1,876	1,842	34	1.87

## 나.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

### ○ 일반회계 주요 세입 예산은

-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 950억원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341억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국·도비 보조금 1,377억원 증액 편성

〈표-2.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2,189	2조 8,026	4,164	14.86
지방세 수입	14,929	13,979	950	6.80
세 외 수 입	1,880	1,539	341	22.17
경상적세외수입	950	878	72	8.22
임시적세외수입	771	500	271	54.31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8	161	△3	△1.60
지방교부세	376	273	103	37.62
조정교부금등	2,523	2,523	0	0.00
보조금	9,556	8,179	1,377	16.83
국고보조금	7,307	6,251	1,056	16.90
시·도비보조금	2,249	1,928	321	16.6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926	1,533	1,393	90.84

## 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

### ○ 일반회계 주요 세출 예산은

- ▶ 무상교통사업교통비 지원 등 270억원  
 누리과정운영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 97억원  
 총 367억원을 감액 편성
- ▶ 석우동 대체시설 부지매입비 431억원  
 장지저수지 주변생태형 문화공원 조성 187억원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공사비 113억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조성 93억원 등  
 자체사업에 2,674억원을 증액 편성
- ▶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 55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4억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1,856억원 증액 편성

〈표-3. 일반회계 세출총괄표(기능별)〉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2,189	2조 8,026	4,164	14.86
일반공공행정	2,746	2,328	418	17.95
공공질서및안전	469	425	44	10.32
교육	498	495	3	0.58
문화및관광	1,853	1,775	78	4.42
환경	2,350	2,210	141	6.37
사회복지	10,245	8,995	1,250	13.90
보건	837	845	△9	△1.04
농림해양수산	3,357	2,786	570	20.4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63	856	207	24.22
교통및물류	4,970	4,221	750	17.76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국토및지역개발	1,035	520	515	98.90
예비비	240	240	△0	△0.11
기타	2,527	2,330	197	8.46

〈표-4.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성질별)〉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2,189	2조 8,026	4,164	14.86
인건비	1,944	1,931	13	0.69
물건비	1,647	1,588	59	3.72
경상이전	17,564	15,943	1,621	10.17
자본지출	8,772	6,820	1,952	28.62
내부거래	1,788	1,496	293	19.57
예비비및기타	475	249	225	90.25

〈표-5. 일반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3조 2,189	2조 8,026	4,164	14.86
의회운영위원회	66	64	2	3.27
기획행정위원회	6,157	5,538	620	11.19
경제환경위원회	5,546	4,886	660	13.51
교육복지위원회	13,266	11,847	1,419	11.98
도시건설위원회	7,154	5,692	1,463	25.70

## 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

###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 ▶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시설투자비 172억원 감액  
배수지증설사업 등 210억원 증액하여, 총 38억원 증액 편성
- ▶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등 27억원 감액  
하수도 시설투자비 등 155억원 증액하여, 총 128억원을 증액 편성

### ○ 기타 특별회계는

- ▶ 교통사업특별회계 25억원 등 8개 특별회계에서 243억원을 증액 편성

〈표-6.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451	5,250	200	3.82
세 외 수 입	3,376	3,187	190	5.95
경상적세외수입	1,757	1,713	44	2.55
임시적세외수입	68	66	2	2.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552	1,408	144	10.25
보조금	263	282	△19	△6.70
국고보조금 등	212	232	△20	△8.59
시·도비보조금 등	51	50	1	2.05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812	1,782	30	1.67
보전수입 등	1,281	1,276	5	0.40
내부거래	530	506	25	4.87



〈표-7. 특별회계 세출총괄표〉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451	5,250	200	3.82
공기업특별회계	3,575	3,408	166	4.88
상수도사업	1,957	1,918	38	1.98
하수도공기업	1,618	1,490	128	8.61
기타특별회계	1,876	1,842	34	1.87
폐수종말처리시설	5	5	0	0.00
폐기물처리시설	14	13	1	6.91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5	5	△0.03	△0.52
화성함백산추모공원	83	80	3	4.28
교통사업	523	498	25	5.02
주민소득지원사업	44	44	0	0.00
대지보상사업	3	3	0.02	0.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9	16	3	16.33
의료보호기금	41	39	2	6.22
도시재생	81	81	1	0.78
도시철도사업	1,056	1,056	0	0.00

〈표-8. 특별회계 세출총괄표(위원회)〉

(단위:억원, %)

구 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감액	증감율
합 계	5,451	5,250	200	3.82
의회운영위원회	-	-	-	-
기획행정위원회	-	-	-	-
경제환경위원회	3,663	3,493	170	4.86
교육복지위원회	125	119	6	4.92
도시건설위원회	1,663	1,638	25	1.53

## 4 주요 검토사항

### ○ 신규/증액사업 현황(20억원 이상)

- ▶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자체사업 중 20억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19건에 1,338억원으로 예산증액의 타당성, 집행가능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계획을 명확히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임.

〈표-9. 20억원 이상 신규/증액 사업 현황〉

※ 국·도비 사업 및 인건비 제외

(단위:천원)

연 번	실과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합 계	총 13개 부서, 19건	239,932,387	106,092,512	133,839,875
1	공원조성과	장지생태문화공원 조성	25,986,210	7,246,050	18,740,160
2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보상비	12,500,000	8,000,000	4,500,000
3	관광진흥과	고령산 해상공원 조성	8,500,000	6,500,000	2,000,000
4	교통지도과	태안3지구 주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160,000	0	3,160,000
5	노인복지과	화성시 북부노인복지관 공사비	5,500,000	3,000,000	2,500,000
6	농식품유통과	무상급식 지원	37,303,311	33,003,346	4,299,965
7	농업정책과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조성	9,296,000	0	9,296,000

연 번	실과명	사 업 명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액
8	도로과	당하~오일간 도로확포장공사	15,000,000	10,000,000	5,000,000
9	도로과	와우~배양간 도로확포장공사	6,100,000	4,000,000	2,100,000
10	동탄 교통건설과	장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7,300,000	1,000,000	6,300,000
11	맑은물시설과	행정소송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금	4,304,126	0	4,304,126
12	맑은물시설과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4,300,000	500,000	3,800,000
13	맑은물시설과	병점·진안지구 배수관로 안정화사업	5,300,000	1,500,000	3,800,000
14	맑은물시설과	상수도 신설공사비	9,456,392	5,743,116	3,713,276
15	버스혁신과	화성형 준공영제 운영 (자가용같은마을버스운영)	16,600,000	14,600,000	2,000,000
16	버스혁신과	화성형 준공영제 운영 (교통취약지역은행결손금지원)	10,000,000	8,000,000	2,000,000
17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5,000,000	3,000,000	2,000,000
18	신도시조성과	석우동 대체시설(주차장46) 부지매입비	43,050,348	0	43,050,348
19	회계과	시청사 주차타워 건립 공사비	11,276,000	0	11,276,000

## 5] 계속비 사업

-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2022년도 계속비사업은 세입·세출 예산안 p.197 참조.

## ⑥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변경사항은 2021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전입금과 예치금에 대한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변경 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이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174억원임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 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일반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세부내역은 붙임 심사결과 참조)
- 특별회계
  -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세부내역은 붙임 심사결과 참조)
-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나. 소수의견의 요지

-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가결안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하는 위원은 없었음.
- 위원별 세부발언내역은 화성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hscity.net/>) 의 『회의록검색』 메뉴 열람, 참조.

붙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1부. 끝.

[붙임]

2022. 09. 0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

1. 세 입 : 3,764,054,872천원

삭 감 액 : 없 음

2. 세 출 : 3,764,054,872천원

삭 감 액 : 935,000천원

증 액 : 없 음

순삭감액 : 935,000천원

예비비조정 : 935,000천원

## 3. 회계별 수정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요구액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비고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정액		
			삭감액	증액			
합 계	3,764,054,872	-	935,000	935,000	3,764,054,872		
일 반 회 계	소계	3,218,943,708	-	905,000	905,000	3,218,943,708	순삭감액 예비비 편성
	정책사업	2,786,169,526	-	905,000	-	2,785,264,526	
	재무활동	200,473,651	-	-	905,000	201,378,651	
	행정운영경비	232,300,531	-	-	-	232,300,531	
특 별 회 계	545,111,164	-	30,000	30,000	545,111,164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5. 실과소별 세부 수정내역 : [별첨] 삭감조서 참조